

건설공사 사후평가 미이행 사유 분석

김경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e-mail : greatekkh@kict.re.kr

Cause Analysis about the Non-compliance of the Ordering Organization for Post-evaluation of Construction Projects

Kyong-Hoon Kim

Post Construction Evaluation & Mgmt. Center, Dept. of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KICT)

요약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2000년부터 건설공사의 효력 및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유사 공사 시행에 참고가 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발주청의 이행률이 저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부터 매년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을 미리 고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누적된 미이행 사업은 1,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미이행 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후평가 준비, 공사기간 연장,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후평가가 아직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평가 준비 또는 수행과정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발주청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평가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2000.3.28. 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 개정이유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사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공사의 시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18 신설)”이다.

그러나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하는 발주청에서의 이행률이 저조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 시행에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사후평가 대상 및 미이행 사업을 사전에 고지하여 왔으며, 2021년 7월 30일부터는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은 매년 100~300건 가량이며, 2014년 대상사업 예고 후 현재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누적된 미이행 사업은 약 1,000건 가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대상사업 및 미이행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발주청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의 미이행 사유를 분석하여 발주청이 왜 지금까지 사후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사후평가 대상사업 및 미이행사업 현황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93호)」에 따라 ‘사업수행성과평가’는 전체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전체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전체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전체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또는 다음 연도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완료해야하는 건설공사는 표1과 같으며, 이를 살펴보면 예고대상 사업 중 토목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2021년 기준)

300~500억원 공사(136건)				500억원 이상 공사(165건)			
분류 소속	건축	토목	산업 설비	분류 소속	건축	토목	산업 설비
국토부	3	42	5	국토부	8	106	0
지자체	8	32	4	지자체	3	12	4
타부처	7	24	11	타부처	5	12	15
합계	18	98	20	합계	16	130	19

그리고 자자체나 타부처에 비해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상사업이 55% 비중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고지 후 현재까지 사후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현재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미이행된 사업은 1,050건으로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건설공사 사후평가 미이행사업(2021년 기준)

300~500억원 공사(210건)				500억원 이상 공사(840건)			
소속	국토부	지자체	타부처	소속	국토부	지자체	타부처
준공년				준공년			
2020	1	5	1	2016	100	43	9
2019	10	15	7	2015	94	40	30
2018	11	9	3	2014	100	88	26
2017	20	27	8	2013	63	46	12
2016 이전	39	35	19	2012 이전	55	113	21
합계	81	91	38	합계	412	330	98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의 사후평가 미이행 건수가 840건으로 500억원 미만의 미이행 건수 201건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 500억원 이상 공사의 사후평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가 발주청에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후평가 대상사업 건수가 많은 만큼 미이행 건수도 493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매년 국토부의 사후평가 대상사업 비중이 50% 이상임을 감안하면 미이행사업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지자체에서의 대상사업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사업 건수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에서의 미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준공예정인 미이행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사후평가 수행시점도 지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건설공사 사후평가 미이행 사유 분석

건설공사 사후평가 예고사업(대상사업, 미이행사업) 고지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발주청으로 부터 건설공사 정보,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계획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회신 받고 있다. 2021년에 발주청으로 부터 회신 받은 362건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미이행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평가준비중(101건)’, ‘공사기간 연장(97건)’, ‘예산 미확보(58건)’, ‘통합발주 예정(38건)’ 등의 사유로 사후평가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발주청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사후평가 준비’,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는 ‘예산 미확보’, 타부처는 ‘통합발주 예정’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건설공사 사후평가 미이행 사유 분석(2021년 기준)

소속	국토부	지자체	타부처	합계
미이행사유				
사후평가 준비	92	6	3	101
공사기간 연장	86	8	3	97
예산 미확보	-	58	-	58
통합발주 예정	22	9	7	38
법령 미숙지	8	1	-	9
공사금액 변경	2	2	-	4
자료 유망실	-	-	1	1
기타	14	17	23	54
합계	224	101	37	36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및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 금액별, 시설물 분류별, 소속기관별 현황을 살펴봄에 비중이 높은 부문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발주청별 사후평가가 미이행 사업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후평가 준비, 공사기간 연장, 예산 미확보, 통합발주 예정 등의 사유로 사후평가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발주청의 예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평가 준비 또는 수행과정의 간소화,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청의 사후평가 전문인력 부족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 수행이 어려운 발주청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평가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2년도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 대통령령 제16765호, 2000.3.28일(<https://www.law.go.kr>)
- [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93호, 2021.7.30일 (<https://www.law.go.kr>)
-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1년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원센터 운영사업”, pp.21-26, 3월, 2022년.